

#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.
- 나. 구체적인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다.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6. 30.~7. 11.) 결과: 의견 반영(요약서 별첨)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##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구직·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

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

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구직·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 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6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  
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 
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 비 용 추 계 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구직활동지원금 :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취업준비를 위한 직접적 실질적 취업지원책 추진
-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: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경험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업자신감 향상
- 고용촉진지원금 :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민간의 여성 채용 활성화 지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소요경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(세출)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 '22년 )	2차년도 ( '23년 )	3차년도 ( '24년 )	4차년도 ( '25년 )	5차년도 ( '26년 )	합계
세 출	구직활동지원금	-	2,250,000	4,500,000	4,500,000	4,500,000	15,750,000
	인턴십 프로그램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6,000,000
	고용촉진지원금	-	24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140,000
	시스템 구축비	-	673,478	-	-	-	673,478
	운영비인건비 등	-	819,058	995,146	995,146	995,146	3,804,496
	총계	1,200,000	5,182,536	6,995,146	6,995,146	6,995,146	27,367,974

※ '23년 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 2,500명 구직활동지원금(30만원\*3개월) 지원 및 80개기업 고용촉진지원금 (100만원\*3개월) 지원

※ '24년부터 구직활동지원금 5,000명(30만원\*3개월), 고용촉진지원금 100개기업(100만원\*3개월) 지원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 분	국비	-	-	-	-	-	-
	시비	1,200,000	5,182,536	6,995,146	6,995,146	6,995,146	27,367,974
	민간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	합계	1,200,000	5,182,536	6,995,146	6,995,146	6,995,146	27,367,974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김현정 주무관  
(T. 02-2133-5019)

**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제2항 관련)**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최선아</b></p>	<p>경제활동촉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지원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, 관련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한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?</p>	<p>경제활동촉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시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</p>